

**신기술 및 신제품 지정 수수료 상한선(제10조의3 관련)**

구 분	수수료(기술 또는 제품 건당)	
신기술 및 신제품 지정	서류·면접 심사	100만원
	현장 심사	100만원 또는 실비정산 가능
	종합 심사	100만원
신기술 및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 연장	서류·면접 심사	100만원
신기술적용제품 확인*	100만원	

\* "신기술적용제품 확인" 제도가 있는 지정에 한함